

# 제8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08. 12. 11(목), 16:30~18:30

2. 장 소 : 병원별관 대회의실(544호)

3. 참석 : 총 11명 중 10명 참석

- 참석 평의원 : 이일영 의장, 이원희 부의장, 유승화 평의원, 이순일 평의원,  
유승익 평의원, 오상탁 평의원, 이화숙 평의원, 강태현 평의원,  
김관영 평의원, 김찬영 평의원 (이상 10명)

- 불참 평의원 : 박윤규 평의원 (1명)

4. 회의안건

- 자문사항: 2008 제1차 추가경정자금예산(안)  
- 심의사항: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5. 개회선언

의장 :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경과에 대해 어느  
분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6. 경과보고

의장: 저희가 회의를 가진지 오래돼서 언제가 마지막 회의였습니까?

이순일 : 저희가 마지막 회의를 한 것이 7월에 개최한 7차 회의입니다.

의장 : 7월 2일에 마지막 평의원회가 있었고 8월 이사회 전에 소집을 요청받은 바  
가 있지만, 정관개정 전에 대한 회신이 없어 평의원회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제8차  
평의원회 개최라는 총장님 서한은 다 가지고 계십니까? 간단히 경과를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저희가 총장님을 통해서 법인에 7월 달 회의내용과 그 전에 우리가 열었  
던 평의원회에서의 회의내용을 근거로 해서 정관 개정에 대한 건의를 하였습니다.  
총장명의로 법인에 정관개정에 대한 요청을 3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평의원회의 평의원수를 늘려서 학생대표 한 사람이 더  
들어오는 것과, 현재 평의원 자격이 5급 이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7급 이상으로 개  
정해달라는 것으로 이는 직원회의 요청사항입니다. 이 2 가지를 평의원회에서 만장  
일치로 결정을 했고 그것을 총장을 통해서 법인에 전달을 했는데도 법인에서 답이

< 간서명란 >

의장



없었다고 합니다. 총장이 법인에 3번이나 전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에서 회신 공문이 오지 않았고, 단지 그 과정에서 총장께서 이사장과 면담을 했다는 내용을 여기에 쓰셨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읽겠습니다.

학교법인 대우학원에 대학평의원회 전의사항과 관련하여 3차례 정관개정 검토의견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공문으로 회신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나 총장이 이사장과 면담을 통해서 학생대표 증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일부 의견 접근을 보았다는 내용을 총장 서안으로 보내주셨고, 다른 하나는 법인에서 안건을 올리지 않더라도 총장이 이사로서 이사회 안건을 현장에서 발의를 할 수 있는데 왜 발의를 하지 못하였는가에 대한 답변은 총장이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에 대한 현장 발의를 하려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 적어도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사 전원이 참석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현장 발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전원이 참석하는 이사회가 그 동안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참석 못하는 이사는 물론, 장기적으로 불참하는 이사가 있기 때문에 전원이 참석하는 이사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머지는 2기 평의원회 임기가 시작되는 2008년 12월 20일까지는 대학평의원회의 전의사항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서안이 다른 평의원들에게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전달이 안 되었습니까?

이순일 : 아마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진성호 : 그렇지 않습니다.

이순일 : 그러면 평의원들에게는 다 보내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의장 : 총장님께서 온 서한이기 때문에 다 보셔야 하는 것이고, 다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부의장 : 그럼 여기서 복사를 해주시지요.

기획처장 : 의장님께 문서가 전달되면 그 다음 절차에 대해 직원들에게 지시를 하셔야 저희가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의장 : 네, 저는 다 전달이 된 줄 알았는데, 거기에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은 지난주에 회의를 소집하려고 했으나, 모든 평의원들이 올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일을 찾다보니 일주일이 늦어졌습니다. 혹시 다음 2기 평의원회 구성원이 다 결정이 되었습니까? 저희 교수 대의원회에서는 1기의 평의원들이 연임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회나 학생회에서도 결정이 되셨습니까?

강태현 : 동문회는 다 바뀌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 간서명 란 >

의장



기획처장 : 그래서 새로 추천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의장 : 학생회는 추천이 들어왔습니까?

기획처장 : 학생회는 2명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하니까 두 명으로 자꾸 제출하려고 하셔서 아직 추천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두 명을 제출해 주시고 일단은 한 명을 위촉하고 그 다음에 변경이 되면 다음 분을 위촉하는 절차대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 학생회에서는 아직 인원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까?

학생회장 : 저희는 인원은 2명으로 직책이나 사람까지 다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기획처장님 말씀대로 하면 순서가 합리적으로 되긴 되는데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난번에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평의원회가 저희 뜻과 다르게 진행되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2명을 올린 상황에서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지 일 순위가 누구고 이 순위가 누구고 이렇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명 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또다시 그 한 명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획처장 : 26일 이사회 후에 두 명으로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 직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다?

오상탁 : 직원회도 그대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의장 : 학생회의 요청이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직원회에서 결정했던 것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2기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2기에서 계속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처장 : 참고로 저희가 안전으로 올린 것이 직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는 3년 또는 5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5년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 5년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5년이 지나면 대략 그 정도 직급이 됩니다.

의장 : 그러면 안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으로 올라온 것이 2008년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처장 :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시 말씀을 드리면, 17일에 대학평의원회 위촉장 수여식이 있구요, 회의가 끝난 후에 그 동안 수고하셔서 총장님께서 대접을 하시려 하셨으나 일이 좀 있으셔서 부득이 제가 만찬을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7. 자문사항: 2008학년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자금예산(안)

기획처장 김민구: 저희가 오늘 자문을 구할 사항은 2008학년도 교비회계 제1차

< 간서명란 >

의장



추가경정자금예산(안)입니다. 2008학년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자금예산(안)에 대해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08학년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자금예산(안) 수입 193,619,315천원에 대해 설명하다. -
- 2008학년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자금예산(안) 지출 193,619,315천원에 대해 설명하다. -

기획처장 김민구: 교수회 재무분과소위원회에서 검토 후 서면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수회 재무분과소위원회 서면질의(1번): 윤병만 교수 및 한국어학당 소송 강사 인건비 지급관련 책임소재 및 구상권 청구여부 -
  - 의장 이일영: 그 당시 총장이 누구셨지요?
  - 기획처장 김민구: 나웅배 총장님이셨습니다.
  - 의장 이일영: 책임소재 관련하여 구상권을 요구하려면 그 당시 총장에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처장 김민구: 25년 전 사건이라 구상권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 평의원 강태현: 기업에서 대표이사가 회사를 설립했다가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대표이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기업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 경우에도 이미 현직을 떠난 분들이므로 구상권 대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 평의원 이순일: 소송관련 배상금은 교비에서 나가는 돈인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돈을 잘못 지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소재와 구상권이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기획처장 김민구: 물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 당시 윤병만 교수에게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면직 진행이 적법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 평의원 유승익: 대의원회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회 생각으로는 학교가 패소한 사항이며, 학교 의사결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그 과정에 대한 내부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교수회의 의견입니다. 똑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해

< 간서명 란 >

의장



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 평의원 이순일: 한국어학당 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기적으로 오래되지는 않았지요?
- 기획처장 김민구: 오명 총장이 계실 때 정경일 교수가 한국어학당 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 중 강사 2인이 아주대 한국어학당에 전임강사 직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장 권한으로 전임강사로 임명하여 근무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정경일 교수가 법정에서 진술하기를 문서로 결재 받지는 않았으나 총장에게 구두로 결재를 받았다고 증언하였고 그 증언으로 인하여 학교가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말씀하시기를 한국어학당의 전임강사가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임강사는 아닌 것 같지만 근로자 계약에 근거하여 해임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1심 승소 이후 2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법률 자문 결과, 현재까지의 내용은 정경일 원장이 구두로 결재 받은 사항에 대해서 오명 전 총장이 증언하지 않거나 실제로 구두로 결재했다고 한다면 패소한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평의원 유승익: 대의원회도 이 사안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상 규명에는 나름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이 문제 처리에 대해 TF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처장 김민구: 지난 번 교수회 대표들과 회의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유익한 회의였고 학교도 교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TF를 만들어서 함께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었으면 좋겠습니다.
- 평의원 유승익: 이 사건의 핵심에 정경일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김덕중 총장이 모시고 오신 분입니다. 이 분이 아주대에 임용된 건, 한국어학당 원장으로 발령된 건, 국제대학원 대우교수 및 국제대학원 임시직 직원으로 발령이 난 건 등 그 분을 둘러싸고 지난 약 8년 간 아주대학교에 비정상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정경일 원장은 지난 약 2년 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올해 후반기에 교내 일부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08년 9월 17일경에 2년을 소급하여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본인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 발령이 났으며, 월급도 계속 지급이 되었습니다.
- 기획처장 김민구: 강명구 원장이 취임 후 조취를 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평의원 유승익: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임기를 마치고 떠났으니 끝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수회 대의원회에서는 교비에서 8억원에 가까운 돈을 지출하게 되었으니 학교에서 이루어진 의사결정에 대해 어느 부분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규명을 하고 판단을 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 평의원 강태현: 만일 구상권 청구는 불가능하더라도 앞으로 재발하지 않는 대책

< 간서명란 >

의장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평의원 이원희: 사전의 본질 및 그 과정 두 가지에 대해서 따로 봐야 합니다. 교수회에서 이야기한 사항은 정경일 교수 개인이 채용과정에서부터 다루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검토가 필요하고, 문제 일으킨 사항에 대해서는 fact-finding을 해서 재발방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평의원 이순일: 12차 교무회의에서 한국어학당 운영규칙을 수정하였으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지요?
  - 기획처장 김민구: 보완조치를 한 것입니다.
  - 평의원 김관영: 채용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채용 이후에 학교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학교가 책임을지고 이후 구상권 청구가 진행이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하여 TF가 구성되어 규명되어야 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 평의원회에서 강제성이 있는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본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barrier를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 의장 이일영: 오늘 회의에서 이 사안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TF에서 밝혀지는 사항을 향후 평의원회에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평의원 모두 동의하시지요?
  - 평의원들 전원: 동의합니다.
  - 의장 이일영: 윤병만 교수는 일시금 지급으로 끝나지만, 한국어학당 강사들은 일시금으로 끝나지 않지요? 계속 고용해야 하는 것입니까?
  - 기획처장 김민구: 그렇습니다. 복직하여 현재 한국어학당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 교수회 재무분과소위원회 서면질의(2번): 종합관 신축관련 자연 사유 및 향후 일정 -
- 평의원 이순일: 이번 학기에 정상적인 교육에 문제가 있을 만큼 강의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2007.09~2009.07까지 종합관을 짓기로 한 계획이 있었는데, 계획과 달리 건설이 지연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처장 김민구: 종합관 신축사업은 진행 중에 계획이 변경되어 건축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법학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종합관(안)’을 다산관 뒤편에 건축하기로 하였으나 이미 기존 성호관을 법학관으로 리모델링 하였고 향후 광교신도시 개발 후 중심도로에 인접한 곳으로 종합관 접근성을 높이고자 율곡관 동편 주차장 쪽으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이에 대해 최근에서야 이사회의 최종 승인

< 간서명 란 >

의장



을 받았습니다.

- 의장 이일영: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획처장 김민구: 2008.10.24일 이사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종합신축(안)’이 ‘종합관 신축(안)’으로 변경 승인되어 이사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2009년 1월 초에 RFP가 나갑니다.
- 평의원 이순일: 종합관 신축 자연으로 건설가계정 38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축소되었는데 그 금액이 다른 용도로 지출된 것입니까?
- 기획처장 김민구: 캠퍼스플라자 리모델링 사업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 평의원 유승익: 교내 강의실 부족으로 인하여 율곡관을 비우기 위하여 본부가 캠퍼스플라자로 이사를 나갔습니다. 캠퍼스플라자 리모델링을 하는데 12억원, 율곡관에 강의실을 만들고 수리하는 비용, 이사비용 등 적지 않은 금액이 소요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종합관이 건축되고 나면 본부 부서가 율곡관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으며 그때에도 다시 수리, 이사, 설치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 소요비용은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이사를 하지 않고 그 비용으로 작은 건물이라도 짓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교수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 기획처장 김민구: 캠퍼스플라자 리모델링 비용 중 큰 금액이 기존 수영장 시설 철거 및 복구에 많이 소요 되었습니다. 이는 수영장을 사무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비용이기에 중복투자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리모델링 이후 계속 사무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건물 신축을 미리 시행하지 못한 것은 저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건물 신축은 학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교수회 재무분과소위원회 서면질의(3번): 예비비 편성 및 사용 -

- 의장 이일영: 아주비전 2023 행사가 본예산에는 왜 안 잡혀 있었습니까? 계획이 없었습니까?
- 기획처장 김민구: 네. 본예산 편성 시에는 일정을 논의하는 과정 중이었습니다. 만일 별도행사를 진행할 경우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 평의원 유승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예비비이겠지요.
- 의장 이일영: 비전선포식 행사가 저녁 뉴스에 나오던데 홍보비가 많이 지출되었습니까?
- 기획처장 김민구: 아닙니다. 학생회와 교직원의 노력으로 돈 안 쓰고도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 의장 이일영: 답변이 충분히 된 것 같고 이 외에 추가로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 평의원 이순일: 전입금 수입 항목 중 본교 법정부담전입금이 2008학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1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결산자료에 본교 관련 법정부담전입금이 3.8억원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얼마나 들어오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합니다.
  - 예산팀장 배영환: 법인에서는 법정부담전입금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신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예산상으로 원래 법정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예산서에 반영했으나, 몇 년 전부터 실제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법인과 협의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법정부담전입금 본교 분에 5억원 편성하였는데 말씀하신바와 같이 결산시 3.8억원이 들어왔습니다. 2008학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10억원을 편성하라고 법인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 평의원 이순일: 2007학년도 결산시 병원에서 법인으로 전출한 금액 중 5억원이 대학으로 전입되지 않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8학년도에 의대로 지원이 되었습니까?
  - 예산팀장 배영환: 의대와 본교는 예산 및 결산이 별도로 관리되어 현재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 평의원 이순일: 교내 국공유지매입 관련하여 법인 경상비 지원은 얼마 규모입니까?
- 예산팀장 배영환: 2007학년도 결산시 6억원이 법인경상비전입으로 지원되어 적립되어 있고, 올해는 추경 포함하여 3억원 정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 평의원 김찬영: 법학관 승강기, 브릿지 공사 재원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 예산팀장 배영환: 법학관 승강기, 브릿지 공사는 애초에 기금에서 인출하여 건축물 관리비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자산성으로 등재함이 옳다고 판단하여 건설가 계정으로 계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시 재원은 기금인출 수입분입니다.
  - 평의원 김찬영: Prefab 구조 건물 신축은 총 소요액이 5억원입니까?
  - 기획처장 김민구: 올해 소요될 비용이 기본 공사 5억원입니다. 여기에는 집기 및 냉난방 공사 비용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평의원 김찬영: 신학생회관 3층에 고시반을 신축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되는 겁니까?
  - 기획처장 김민구: 계획이 변경되어 현재 고시반 위치에서 집기 및 기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 간서명란 >

의장



- 의장 이일영:

2008학년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자금예산(안)에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자문을 마치겠습니다.

## 8. 심의사항: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의장 : 다음으로 학칙 개정(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제안근거

-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제35조(대학평의원회의 기능)

### 나. 제안요지

#### □ 개정사유

- 기구 신설 및 학과/과정 신설에 따른 관련 내용 제개정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611호) 개정(2008.2.19)  
에 따른 중등교원연수원 명칭 변경
  - 중등교원연수원 → 교육연수원
- 교과부 2009학년도 교육대학원 정원조정 결과(교직발전기획 과-3296호)
  - 전공신설 : 영재교육전공, TESOL전공
  - 전공폐지 : 청소년지도전공, 불어교육전공, 보건교육전공
- 간호학부 입학정원 증원(30명) 교과부 인가(대학제도과-3398, 2008. 8.13)에 따른 정원조정을 위한 별표9 개정
- 정부기구명 변경에 따른 개정
  -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과학기술부로 변경
- 2008, 2009 교육과학기술부 발표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 근거,  
순수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모집시기 및 방법은 대학이 자유롭게 실  
시하도록 되어있음(9월 입학도 가능)
  - 부모, 본인 모두 외국인인 자의 2학기 입학허가에 대한 근거 마련
- 상위법에 의한 군 휴학자 학점 취득 근거 마련(병역법 제73조, 고등교  
육법 제23조에 의거 군 휴학자도 학점취득 가능)
- 학기제 변경 근거 마련(일반대학원 3학기제 시행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2학기→1년 · 2년(4학기)→2년 · 4년(8학기)→4년
- 3학기제 시행시 학기당 수업일수 및 수강신청 가능학점을 규정함(매학  
기 10주 이상, 9학점까지)
- 일반대학원 복수학위협약 및 제도 운영에 대한 근거마련

< 간서명란 >

의장



## □ 주요 개정내용

- 기구 신설 및 폐지에 따른 개정
  - 법학전문대학원 및 관련 부속기관, 지원기관 신설
  - 의학전문대학원 신설
  - 법무대학원 신설
  - 공공정책연구소 및 장위국방연구소 신설
  - 기초교육대학 신설 및 교양학부 폐지
- 대학원 학과/과정 신설 및 변경
  - NCW공학협동과정 및 응용사회과학과 명칭 변경
  - 정치외교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신설
  - 대학원 학연산 협약체결에 따른 학연산 협동과정 “LIG넥스원(주) 석사과정” 신설
  - 산업대학원 지식재산공학과 신설
  - 법무대학원 학과/전공 표기

<설명자: 기획팀 진성호>

진성호 : 오늘 학칙개정 심의안건은 총11개 정도입니다. 우선 기구 및 학과 신설에 대한 내용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법무대학원, 공공정책연구소, 장위국방연구소, 기초교육대학 신설 및 교양학부 폐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위과정 추가 관련입니다. 학연산 협동과정인 LIG넥스원 석사과정 신설과 산업대학원의 지식재산공학과 신설 등입니다. 두 번째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현재 『교육대학원부설중등교원연수원』이라는 명칭을 『교육대학원부설교육연수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2009학년도 교육대학원의 정원조정 결과에 따라 전공을 신설하고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전공신설 부분은 영재교육 전공과 TESOL전공을 신설하는 것이며, 전공 폐지는 청소년지도전공, 불어교육전공, 보건교육전공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주대학교 간호학부 입학정원 증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교과부의 승인사항이므로 교과부에 정원증원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확정하게 되는데 정원을 30명에서 70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이와 관련 사항에 대하여 학칙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순수 외국인 『학생 모집시기 및 방법』에 대한 학칙 개정입니다. 기존에는 1학기에만 순수 외국인 모집이 가능하였으나, 2학기 입학허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2학기에도 순수 외국인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일곱 번째는 현재까지 불가능하였던 부분으로 군휴학자에 대하여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 간서명 란 >

의장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법은 병역법과 고등교육법(23조)입니다. 여덟 번째는 아주대학교의 일반대학원 3학기제 시행이 가능하도록 학칙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아홉 번째는 3학기제를 시행할 것에 대비하여 학기당 수업일수 및 수강신청 가능학점 부분들을 변경했습니다. 현재 2학기 체제에서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3학기제를 시행할 경우 11주 이상으로 수업일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강신청 학점은 2학기제의 경우 매학기 12학점이나 3학기제로 개편할 경우 9학점으로 수강신청 학점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열 번째는 일반대학원의 국외대학과의 복수학위협약체결에 따른 학점인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학칙개정입니다. 최근 우리대학의 경우 상해 교통대와 복수학위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학칙 개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학전문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해서 학과 및 학위과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번 학칙 개정(안)이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 네, 이 내용은 교무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이지요?

진성호 : 네, 최종적으로 평의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순일 :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학부는 학칙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 전공은 별표5에만 나와 있습니다. 별표 5에는 학사과정과 전공이 나와 있는데, 다른 곳에 전공이 또 나와 있는 곳이 없지요?

진성호 : 네, 그렇습니다.

이순일 : 거기에 보면 연계전공이 2개만 표시되어 있고, 하나의 연계전공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진성호 : 어느 전공 말씀입니까?

이순일 : 기초의과학 연계전공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성호 : 그 부분은 다음주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현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순일 : 그럼 아직 안 만들어진 것인가요?

진성호 : 신설은 확정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다음주 화요일 교무회의를 거치야 합니다.

이순일 : 교무회의를 안 거쳤는데 신설이 확정되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진성호 : 연계전공 규칙에 따르면 연계전공 신설에 대하여 신설 절차를 다음과 같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관 학부(전공)에서 소정의 『연계전공 신설 제안서』를 제출하여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을 하면 신설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재정이나 공간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교무회의 심의를 한 번 더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간서명란 >

의장

이순일 : 이번에 기초의과학연계전공 신설 내용이 빠져 있는데 진성호 선생님 말씀은 아직 교무회의를 통과하지 않아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진성호 : 네, 맞습니다.

이순일 : 그럼 언제부터 기초의과학연계전공이 시행되는 것이지요?

의장 :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까?

이순일 : 기초의과학연계전공이 만들어지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 그럼 그 자료가 어디서 나셨습니까?

이순일 : 지금 진성호 선생님이 제게 가져다 주신 자료입니다. 그럼 2009년 3월에 만들어 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성호 : 자연과학부 기초의과학 연계전공 말씀이신가요?

이순일 : 네

진성호 :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순일 : 연계전공 규칙에 따르면 신설 신청시기가 시행학년도 6개월 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2009년 3월에 연계전공을 시작하려면 2008년 9월1일에 신청이 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진성호 : 지금 신청은 되어 있습니다.

이순일 : 연계전공 신설이 규정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설 신청 시기가 규정에 명확하게 시행학년도 6개월 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교가 절차를 안 따르고 계시는 것인지요?

의장 : 그러면 9월 이전에 했어야지요.

진성호 : 신청시기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순일 : 만약에 9월 이후에 신설 신청이 되었으면, 기초의과학 연계전공이 내년 2학기에 만들어 지는 것인지요? 학교가 행정 상 실수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월에 시행을 하려면 9월 이전에 신청이 되어 있었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아서요.

진성호 : 네, 알겠습니다. 자연과학부와 교무처에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순일 : 기초의과학 연계전공 신설이 회의 자료에 들어있지 않은 이유는 아직 기초의과학 연계전공 신설이 교무회의에서 최종 심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의장 :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서명 란 >

의장



유승익 : 법무대학원이 신설이 되지 않았습니까?

진성호 : 네, 맞습니다.

유승익 :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알아서 결정을 잘 하셨겠지만, 법무대학원이 일종의 특수대학원 아닙니까?

진성호 : 네, 맞습니다.

유승익 : 특수대학원인데, 교육과정위원회에 상정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수들의 책임시수 문제를 거기서 일부 해결하겠다고 올라와서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시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가요?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들의 폐이(Pay)가 본교 교수들과 차이가 있습니까?

진성호 : 폐이(Pay)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책임시수 부분은 심각하기 때문에...

유승익 :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진성호 : 저희가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산정을 좀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의장 :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이순일 : 대학평의원회 기능을 보면,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장이 최종 해석한다는 부분이 상충되지 않나요? 이를테면 학칙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학평의원회가 심의하게 되어 있으면, 학칙에 나오는 교수회에 관한 사항은 대학평의원회에서 다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대학교 학칙에 분명히 교수회가 나와 있으며, 기타 교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학평의원회의 기능 중 하나가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심의이니까, 교수회 운영규칙이 적절한가 여부는 대학평의원회가 심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회 운영규칙의 어떤 조항이 무효라는 것을 대학평의원회와 상의하지 않고 이사장님이 선언하실 수가 있는 것인가요?

김주용 : 혹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이순일 : 대학평의원회의 기능 중 하나가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심의인데, 교수회를 둔다는 것이 학칙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회 운영규칙은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교수회 운영규칙은 학칙의 하위규정이라서 평의원회 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것인지요?

김주용 :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은 학교 전체에 학칙이 하나가 있다고 보고, 그 학칙에 대해서 평의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학칙의 내용들 중에서 보면 따로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 간서명 란 >

의장



의장 : 그러니까 총장이 따로 정한다고 하는 부분은 평의원회에서 심의하지 않는다 는 말씀이시지요?

김주용 : 네

유승익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총장이 따로 정하다는 부분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진성호 : 네, 학칙에서 위임한 사항들이 학칙에 포함되어 심의안건으로 평의원회에 상정되어야 하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라는 말씀입니까?.

이순일 : 대학평의원회 기능에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를 둔 취지는 학칙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은 대학평의원회에서 살펴보라는 것인데, 학칙의 하위규정에 있다 해서 학칙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없이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가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의 하나인데, 학칙의 하위규정 중 주요한 내용이 평의원회에 모르게 제정 또는 개정되어 학칙의 원래 뜻과 상충되는 일이 생길까 우려됩니다.

의장 : 그러면 그 대답은 기다리는 것으로 하구요.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대로 회의를 마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평의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기타: 대학평의원회 회의 개최시 전회 회의록 첨부, 회의진행경과 보고사항 정리 보고.

2008년 12월 11일

< 간서명란 >

의장



2008년 12월 11일

의장 이일영

부의장 이원희 (서명)

평의원 유승화 (서명)

평의원 이순일 (서명)

평의원 유승익 (서명)

평의원 오상탁 (서명)

평의원 이화숙 (서명)

평의원 김찬영 (서명)

평의원 강태현 (서명)

평의원 김관영 (서명)

평의원 박윤규 (서명)

기록 진성호 (서명)